

## 이천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2. 5. 4  
산업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4월 19일 이천시장 제출  
나. 회부일자 : 2002년 4월 19일  
다. 상정일자 : 제52회 이천시의회 (임시회)  
    제1차(2002. 5. 3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
    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박재한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준농림지역의 범위를 정하고,  
2000. 7. 29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 
면제시 시장·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당해 지  
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  
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산정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

#### 나. 주요골자

-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준농림지역을 이천시 전지역으로 하되 그 시설물의 범위를  
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골프연습장으로 정함.
-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 
산정기준을 정함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현수)

- 본 개정안 제13조(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) 제1항은 주차장법 제19조 1항이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준농림지역의 범위지정권한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범위를 이천시 관할 구역내 모든 준농림지역으로 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
- 동조 제2항은 준농림지역 안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을 규정한 것으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(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) 제1항과 별표1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을 위탁시설, 제1종근린생활시설, 다독주택 및 다세대주택, 공동주택, 골프장·골프연습장, 옥외수영장, 관람장, 기타 건축물로 규정하고 그 종류를 세분할 경우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동령의 설치대상보다 오히려 설치대상의 종류를 단순화함으로 인하여 상위법과의 관계에 있어 검토를 요함
- 제17조 제1항은 법 제19조제9항에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과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, 동조 제2항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감액의 근거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
### 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### 7. 기타사항 : 없음